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과 학 기 술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27호, 2022.1.11. 공포, 2022.7.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 개정(“확충·고도화”를 “구축, 확충·고도화”로)에 맞춰 연구개발 시설·장비 구축과 관련된 시책 마련 및 추진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조항에 ‘구축’ 문구 추가(안 제42조, 안 제42조의2)
- 나. 연구개발 시설·장비 중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대형연구시설사업의 전주기에 대하여 체계적 기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연구시설의 구축관리에 관한 별도 표준지침 제정의 근거를 마련(안 제42조의3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확충·고도화”를 “구축, 확충·고도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충·고도화”를 “구축, 확충·고도화”로, ““확충·고도화 등””을 ““구축, 확충·고도화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확충계획”을 “구축, 확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확충·고도화”를 “구축, 확충·고도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확충 및 운영”을 “구축, 확충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4호의2 및 제7호 중 “확충·고도화”를 각각 “구축, 확충·고도화”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확충하였거나 확충할”을 “구축, 확충하였거나 구축, 확충할”로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에 관한 표준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른 표준지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이하 ‘대형연구시설’이라 한다)의 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적용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u>확충·고도화</u> 등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u>확충·고도화</u> ,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이하 “ <u>확충·고도화등</u>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u>구축, 확충·고도화</u> 등의 추진) ① ----- ----- ----- <u>구축, 확충·고도화</u> ----- ----- “ <u>구축, 확충·고도화등</u> ”----- -----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 ----- ----- ----- -----.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u>확충 계획</u>	1. ----- ----- <u>구축, 확충계획</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	④ ----- ----- -----

을적인 활용체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 및 제3항에 따라 구축한 활용체제를 종합하여야 한다.

2. (생략)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등의 추진을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법인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1. ----- 구축, 확충·고도화 -----
-----.

-----.

2. (현행과 같음)

⑤ -----

----- 구축, 확충 및 운영 -----

-----.

⑥ -----
----- 구축, 확충·고도화 -----

-----.

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⑧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u>확충</u> <u>· 고도화</u> 등에 관한 정책 형성 <u>·</u>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	4. ----- <u>구축,</u> <u>확충·고도화</u> ----- ----- -----
4의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u>확충·고도화</u> 등과 관련된 인 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의2. ----- <u>구축, 확충·고도화</u> ----- ----- -----
4의3. ~ 6. (생 략)	4의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장 비 <u>확충·고도화</u>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 -- <u>구축, 확충·고도화</u> -----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충하였거나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 ④ (생략)

<신 설>

및 수립절차 등) ① -----

----- 구축, 확충하였거나 구축, 확충할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에 관한 표준지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른 표준지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이하 ‘대형연구시설’이라 한다)의 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적용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6832